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6. .

제안자 : 안 산 시 장

의안 번호	
----------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97. 2. 5일자로 감면조례개정안이 시달 되었기에
- 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과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자구수정이 불가피한 안산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 】

- 농어촌주택개량등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범위를 시군간 통일 (안 제10조)
 -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함.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자구 수정 (안 제11조)
 -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를 → 사용승인일까지로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를
→ 공동주택용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류....)로
 -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를 → 사용승인일부러로 함.

○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조례 중복문구 삭제 및 면제대상업종 구분 (안 제12조)

- 제1항 제1호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를
→ 승인을 받은 자로 함.
- 제1항 제3호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로 함.

【 신 설 】 ——— 사권제한 부동산 및 지역개발을 위한 취득부동산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규정 신설

○ 제10조 (농어촌주택개발등에 대한 감면)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 제19조의 2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 '97 감면대상 예상자 없음
- 기타사항
 - 경기도 세정13400-305('97.2.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법에 따라 계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류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부속토지류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담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택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p> <p>1. ~ 4. (생략)</p> <p>【 신 설 】</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불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p> <p>4.(생략)</p> <p>【 신 설 】</p>	<p>-----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p> <p>4.(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2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율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